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5118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39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551188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정흥규

변론 종결 2020. 11. 20.

판결 선고 2021. 1.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50,167원 및 그 중 162,133,249원에 대하여는 2019. 2. 11.부터, 39,622,87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각 2019. 8. 2.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34,244,6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34,244,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34,331,2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34,331,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3.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20.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제1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조건이 변경되면서 보증기한이 연장되어왔다.

2) 원고는 2014. 12. 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48,960,000원, 보증기한 2015. 12. 4.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제2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7,6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8. 3. 28.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제1보증서를 회수하면서 제3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0. 1.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3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주면서, 피고 회사는 제3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략)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5) 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E은행은 2018. 10. 4. 원고에게 제3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기업은행은 2019. 1. 30. 제2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1. E은행에게 제3보증서에 기하여 162,133,249원(= 원금 158,425,800원 + 이자 3,707,449원), 2019. 4. 18. 기업은행에게 제2보증서에 기하여 39,622,870원(= 원금 39,200,000원 + 422,87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제2보증약정에 관하여 34,680원, 제3보증약정에 관하여 977,790원(= 387,500원 + 590,290원) 합계 1,012,470원이 발생하였고, 대지급금은 1,381,578원이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피고 B은 2018. 1. 3. 자신의 딸인 피고 C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5.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및 근저당권 말소 등

- 1) 피고 C는 2018. 1. 5.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500,000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은행인 2009. 10. 23.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2) 2018. 1.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9,561,200원, 2020. 6. 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7,260,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H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234,331,251원[= 구상금 채권 204,150,167원(= 대위변제금 201,756,119원(= 162,133,249원 + 39,622,870원) + 미수위약금 1,012,470원 + 대지급금 1,381,578원) + 지연손해금 30,181,0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34,331,2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 3.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제3보증약정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체결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제1보증약정을 체결한 이후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조건이 변경되면서 보증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오던 중인 2018. 3. 28. 피고 회사와 제3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준 점, 제1보증약정과 제3보증약정은 주채무자가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이 피고 B으로 동일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또한 D은행(나중에 E은행으로 합병되었다)과 E은행으로 동일한 점,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보증약정시에도 연대보증인이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점 등 제3보증약정의 경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제3보증약정은 실질적으로 종전의 제1보증약정의 만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3보증약정에 따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은행은 2018. 10. 4. 원고에게 제3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기업은행은 2019. 1. 30. 제2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사실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원고가 제2, 3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9. 2. 11. E은행에게, 2019. 4. 18. 기업은행에게 각 보증 금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으로서 연대보증금채권 204,150,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갑 제2, 3, 8 내지 10,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1. 3. 무렵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3,941,430원이며, 그 외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부동산	229,561,200
2	서울 동작구 J 임야 8,666㎡ 중 49.587/8,666 지분1) 위 토지에서 2019. 7.경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가 분할되어, 위 토지는 면적이 4,158㎡로 감축되었다.	14,380,2302) 원고는 갑 제14호증(감정평가서, 기준 시점 2016. 9. 19.)의 기재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 중 피고 B 소유 지분, 서울 동작구 J 임야 4,158㎡ 중 피고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14,380,23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갑 제14호증은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가 분할되기 전 서울 동작구 J 임야 8,666㎡ 중 49.587/8,666 지분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합계	243,941,430	

② 피고 B은 위 2018. 1. 3.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7,679,26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원고는 동대문세무서에서 회신한 양도소득세 3,357,325,920원은 귀속연월일이 2018.

1.이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 2018. 1. 3. 당시에 원고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기업은행	147,352,000
2	E은행	36,945,000
3	원고	201,756,0003) 원고가 발급한 제2, 3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 및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상당
4	K카드	13,800,000
5	L카드	24,305,000
6	D은행 근저당채무	23,521,265
합계	447,679,265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로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결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었으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 및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와 피고 C는 부녀지간인 점, 피고 C는 2014. 11. 26.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가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는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C는 2018. 1. 5.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2020. 6. 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7,260,4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대출금의 2018. 1. 3. 당시 잔존원리금은 23,521,2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7,260,400원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는 공동담보 가액은 위 267,260,4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무 23,521,265원을 공제한 243,739,135원(= 267,260,400원 - 23,521,265원)이 되고, 한편 원고의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7. 15.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234,244,643원[= 구상금 204,150,167원 + 대위변제금 162,133,249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2. 11.부터 피고 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2.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147,737원(= 162,133,249원 $\times$ 173/365 $\times$ 0.08, 원 미만은 버림) + 대위변제금 162,133,249원에 대한 그 다음날인 2019. 8. 3.부터 2020. 7. 1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499,137원(= 162,133,249원 $\times$ 348/366 $\times$ 0.12) + 대위변제금 39,622,87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4. 18.4)부터 피고 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2.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26,698원(= 39,622,870원 $\times$ 107/366 $\times$ 0.08) + 대위변제금 39,622,870원에 대한

그 다음날인 2019. 8. 3.부터 2020. 7. 1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520,904원(= 39,622,870원 × 348/366 × 0.12)]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243,739,135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34,244,643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34,244,6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34,244,6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착오로 잘못 지정함으로써 취소 및 가액배상금을 234,331,251원으로 구하나, 위 234,244,6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명산

판사윤지상

판사권순현

별지

1) 위 토지에서 2019. 7.경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가 분할되어, 위 토지는 면적이 4,158㎡로 감축되었다.

2) 원고는 갑 제14호증(감정평가서, 기준 시점 2016. 9. 19.)의 기재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 중 피고 B 소유 지분, 서울 동작구 J 임야 4,158㎡ 중 피고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각 14,380,23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갑 제14호증은 서울 동작구 M 임야 4,508㎡가 분할되기 전 서울 동작구 J 임야 8,666㎡ 중 49.587/8,666 지분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3) 원고가 발급한 제2, 3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 및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상당

4) 원고는 착오로 2019. 4. 8.부터 기산하여 지연손해금을 1,013,306원(= 37,622,870원 ×

117/366 × 0.08)으로 계산하였다.